#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10

발의연월일: 2021. 4. 15.

발 의 자: 권성동・김영식・서병수

윤창현ㆍ이 영ㆍ이철규

추경호 • 태영호 • 한무경

허은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9년 말까지는 140만원, 2020년 말까지는 90만원, 2021년 말까지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액을 공제하고 있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점차 줄이는 것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의 혜택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연기 관차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취지이지만, 전기차 충 전시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그 중간단계로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로의 단계적 전환 및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② (생 략)	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③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	
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2021년 1월 1일부터 <u>2021년</u>	3 <u>2024년</u>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2월 31일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	
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